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위생용품 기준 및 규격 관리계획 등 수립
및 위생용품심의위원회 설치 등〉

■ 박성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9435호)

2026. 9.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상지원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위생용품 기준 및 규격 관리계획 등 수립 및 위생용품심의위원회 설치	3
2. 일회용 식탁보의 위생용품 지정	12

I. 개요

1. 박성훈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9435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성훈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6. 6. 23.

(3) 회 부 일 : 2026. 7. 23.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위생용품은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생 및 안전에 특별한 관리를 필요로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위생용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방향성을 규정하는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으나 기본적인 계획 수립과 위생용품의 위생 및 안전에 관하여 전문가들이 심의하도록 하는 심의위원회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위생용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5년마다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이를 심의하는 위생용품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와 함께 최근 음식점 등에서 그 편리성 등을 이유로 일회용 식탁보의 사용이 급증하면서 일회용 식탁보의 일부 제품의 위생에 대하여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일회용 행주·타월·종이냅킨에 대해서는
기타 위생용품으로 분류하여 관리를 하고 있으나 식탁보에 대하여는
특별한 관리규정이 없는 만큼, 일회용 식탁보도 기타 위생용품으로 분
류하여 현행법의 관리·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의2 및 제10조의3 신설 등).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위생용품 기준 및 규격 관리계획 등 수립 및 위생용품심의위원회 설치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생용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관리계획, 위생용품의 기준·규격 및 안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위생용품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관계 공무원, 영업 종사자, 시민단체 추천자 및 관련 전문가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며,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0조의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조의2(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관리계획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제10조의3에 따른 위생용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

(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관리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 위생용품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3. 위생용품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해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리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신 설>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관리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3(위생용품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위생용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관리계획 심의

2. 위생용품의 기준과 규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생용품의 안전에 관한 중요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위생용품 관계 공무원

2. 위생용품에 관한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

3.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위생용품의 안전에 관한 학

	<u>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u> <u>④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재임한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 <u>⑤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u>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2조제1호1)는 위생용품을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용품으로서 보건위생 확보를 위하여 특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용품으로 정의하고, 그 범위에 세척제, 행굼보조제, 위생물수건, 구강관리용품, 문신용 염료 및 기타 위생용품을 포함하고 있음.
- 또한 현행법은 영업의 신고(제3조), 수입 위생용품의 신고 및 검사(제8조), 기준 및 규격(제10조), 자가품질검사 및 위탁검사(제13조), 출입·검사·수거(제14조), 폐기처분(제16조) 등 위생용품의 위생·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²⁾하고 있으나,

1)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용품”이란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용품으로서 보건위생 확보를 위하여 특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세척제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야채, 과일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제제(製劑)
 - 2) 식품의 용기나 가공기구, 조리기구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제제
 - 나. 행굼보조제: 자동식기세척기의 최종 행굼과정에서 식기류에 남아있는 잔류물 제거, 건조 촉진 등 보조적 역할을 위하여 사용되는 제제
 - 다. 위생물수건: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수건
 - 라. 구강관리용품: 구강위생 확보, 구강건강의 증진 및 유지 등의 목적으로 제조된 칫솔, 치실, 설태제거기(혀에 낀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마. 문신용 염료: 인체의 피부에 무늬 등을 새기기 위한 피부 착색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바. 기타 위생용품
 - 1) 일회용 겹 · 숟가락 · 젓가락 · 포크 · 나이프 · 빨대
 - 2) 화장지, 일회용 행주 · 타월 · 종이냅킨,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티슈
 - 3) 일회용 이쑤시개 · 면봉 · 기저귀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영업의 신고) ①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위생용품소분업 또는 위생용품소비자리필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위생용품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수입 위생용품의 신고 및 검사) ① 위생용품수입업자는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위생용품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낮거나 없는 경우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생용품에 대하여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관계 공무원이나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
이나 위생용품심의위원회의 설치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이에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관
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함)과 시행계획을 수립·시
행하도록 하고, 관리계획과 위생용품의 기준·규격 및 안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위생용품심의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변화하는 제품 및 유통환경에 대응하여 위생용품 관리의 중장기
정책방향을 마련하고, 기준·규격 등 주요 안전관리 사항에 대한 전
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첫째, 안 제10조의3제1항은 위생용품심의위원회가 위생용품의 기
준·규격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음.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가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
우에는 검사 결과의 확인 전이나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 전에 사용 또는 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조건을 붙
여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제10조(기준 및 규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보건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생용
품의 성분·제조방법·사용용도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3조(자가품질검사 및 위탁검사) ① 위생용품제조업자 또는 위생물수건처리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가공·위생처리하는 위생용품이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맞는지
를 검사하여야 한다.

제14조(출입·검사·수거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
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관리 및 영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업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
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 사무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 출입하여 위생관리의 실태,
제조시설, 관계 서류나 장부, 제품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품을 수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총리령으로 정하는 최소량의 제품을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폐기처분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가공·소분 또는 위생처리하거나 수입한 위생용품
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할 수 있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생용품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해당 영업자에게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회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1의2. 제12조의2를 위반한 경우

2. 위생용품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최근 5년간 위생용품의 기준·규격 개정은 총 5회에 불과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현재도 위생용품 기준·규격 개정 등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일부 위생용품에 적용되는 기준·규격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제57조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첨가물분과의 심의를 거치고 있음.³⁾

< 최근 5년간 위생용품 기준 및 규격 개정 현황 >

연도	건수	주요 내용
2022	2	- 세척제 사용금지 성분 신설 - 위생용품 시험법 중 포름알데히드, 착색료, 일반세균수, 대장균 시험법 개선
2023	1	- 어린이용 기저귀 및 면봉에 납 기준 상향 및 프탈레이트류 규격 추가 - 세척제 pH 규격 개선 및 제조기준의 생분해도 평가 기준 일부 삭제
2025	1	구강관리용품 및 문신용 염료 개별 기준·규격 및 시험법 신설
2026	1	세척제 제조기준 중 생분해도 기준 삭제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 최근 5년간 위생용품 기준 및 규격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현황 >

연도	건수	주요 내용
2022	2	- 세척제 사용금지 성분 지정 개정안에 대한 관련 업계 자문 - 세척제 pH 규격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업계 자문

※ 비상설, 관련 분야 학위 소지자 또는 경력자 등 학계, 산업계 전문가 10인 내외 위원 구성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3) < 최근 5년간 위생용품 관련 기구·용기·포장 기준·규격의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식품첨가물분과 심의 현황 >

연도	건수	목적
2022	1	합성수지재 재생원료 기준 개선, PBAT 규격 설정, 시험법 개선(안) 등
2024	1	식품용 기준 인쇄면 기준, 비소 정량법 및 시험법 개정(안)
2025	1	‘기구·용기·포장의 기준·규격’ 및 ‘식품첨가물 기준·규격’ 재평가 결과 심의
2026	1	‘기구 및 용기·포장 기준 및 규격’의 폴리프로필렌(PP) 재생원료 인정기준 신설 및 정비(안) 등

* 위생용품 중 일회용 컵, 숟가락, 젓가락, 포크, 나이프, 빨대의 기준 및 규격은 「식품위생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적용

* 위원 구성: 관련 분야 학위 소지자, 7년 이상 경력자, 관련 단체 추천 전문성 있는 자 등 전문가 15인 구성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요위원회 설치 현황: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정보공개→주요위원회’ 참고

아울러 정부는 2022년 행정안전부의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장기간 미구성·운영실적 저조 등의 위원회를 폐지하고 유사·중복 위원회를 통합하는 정비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정부위원회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⁴⁾.

따라서 위생용품심의위원회의 신설 여부는 위생용품의 기준·규격 등에 관한 실제 심의 수요, 기존 자문기구의 활용 가능성 및 정부의 위원회 정비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안 제10조의3제5항은 위생용품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상 유사한 심의 위원회는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음⁵⁾.

위원장의 선임, 위원의 해촉,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등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그 기능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유사 입법례와의 법체계적 정합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비공무원인 위원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유사 입법례⁶⁾를 고려하여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둘 것인지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2022년 정부는 정부위원회 636개를 점검하여 유사·중복 및 운영실적 저조 등의 사유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245개 위원회를 정비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제21대국회에서 122개 위원회에 대한 정비가 완료되거나 정비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제22대국회에서 나머지 123개 위원회에 대한 정비를 추진 중임.

5) [참고 1]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의 하위법령 위임 입법례

6)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유사 입법례 >

「식품위생법」

제90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안전성심사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다.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중 검토

- 식품 등 타 분야에 비해 위생용품의 경우 기준·규격 개정 수요가 적은 편이며, 위생용품의 안전성 등에 대한 이슈 등이 거의 없는 상태로,
- 선제적 규제방향 설정 등을 위한 위생용품 기준·규격 기본 계획 수립 및 위생용품심의위원회 설치 필요성은 낮음.

□ 행정안전부: 신중 검토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의 설치를 제한하고,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위원회는 통합하거나 분과위원회·전문위원회 등으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개정안의 ‘위생용품심의위원회’는 위생용품 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한 자문위원회인 만큼, 별도 위원회를 신설하기보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내 정책자문위원회 등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일회용 식탁보의 위생용품 지정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일회용 식탁보를 기타 위생용품의 범위에 추가하여 현행 법에 따른 관리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위생용품”이란 인체에 직접 · 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용품으로서 보건위생 확보를 위하여 특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 ----- ----- ----- -----.
가. ~ 마. (생략)	가. ~ 마. (생략)
바. 기타 위생용품	바.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화장지, 일회용 행주 · 타월 · 종이냅킨,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티슈	2) ----- -- <u>종이냅킨 · 식탁보</u> ----- ----- ----- -----
3) · 4) (생략)	3) · 4) (현행과 같음)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회용 식탁보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영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등) 이 법 시행 당시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일회용 식탁보를 제조·가공 또는 수입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제1호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나. 검토의견

- 현행법상 위생용품은 세척제, 행굼보조제, 위생물수건, 구강관리용품, 문신용 염료 및 기타 위생용품으로 구분되며, 이 중 기타 위생용품에는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포크·ナイ프·빨대, 화장지·일회용 행주·타월·종이냅킨,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일회용 이쑤시개·면봉·기저귀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일회용 식탁보는 음식점 등에서 식탁 표면의 오염을 방지하고 위생적인 식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제품으로, 최근 사용이 증가하면서 위생관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일회용 식탁보를 위생용품에 포함하여 제조·수입·유통 전반을 안전관리함으로써 위생상 위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일회용 식탁보는 위생적인 식사환경을 위해 일정 수준의 관리가 필요할 수 있으나,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별도의 안전관리가 필요한지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일회용 식탁보는 식품과 직접 접촉하거나 인체에 적용되는 제품이 아니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현재까지 위생상 위해 발생 사례도 확인되지 않았음.

- 참고로, 2023년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법률 제19474호, 2023. 6. 13.)으로 구강관리용품을 위생용품에 추가할 당시에는 칫솔·치실 등이 인체에 직접 접촉하여 오염물질이 체내에 침투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위해 가능성 등을 고려한 바 있음⁷⁾.

둘째, 일회용 식탁보를 위생용품으로 편입할 경우 제조·수입업자에게 영업신고, 위생교육, 시설기준 준수와 함께 자가품질검사 또는 수입검사 등 새로운 규제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일회용 식탁보의 위생용품 편입 여부는 식품과의 직접 접촉 또는 인체 적용 여부, 실제 위해 발생 여부 및 위생용품 편입에 따른 규제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다.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 의견

□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중 검토

- 일회용 식탁보는 오염 방지와 청소를 용이하게 하여 위생적인 식사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제품으로, 식품과 직접 접촉하거나 인체에 적용되는 제품이 아니고 현재까지 위생상 위해 발생 사례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위생용품 편입 여부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7)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6091호) 검토보고서」, p.6 참고

문 의 처
02)6788-54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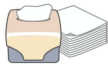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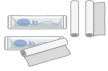
【참고 1】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의 하위법령 위임 입법례

식품위생심의위원회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식품위생법」 제58조(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3호의 사람을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 위촉하고, 제2호와 제4호의 사람을 합하여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1. 식품위생 관계 공무원 2. 식품등에 관한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 3.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제59조에 따른 동업자조합 또는 제64조에 따른 한국식품산업협회(이하 “식품위생단체”라 한다)의 추천을 받은 사람 5.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재임한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에 식품등의 국제 기준 및 규격을 조사·연구할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연구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관련 업무는 제외한다. 1.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제시한 기준·규격 조사·연구 2. 국제식품규격의 조사·연구에 필요한 외국정부, 관련 소비자단체 및 국제기구와 상호협력 3. 외국의 식품의 기준·규격에 관한 정보 및 자료 등의 조사·연구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u>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7조(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건강기능식품의 정책에 관한 사항 2.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에 관한 사항 3.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상 8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식품·의약품·영양 및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건강기능식품 관련 단체의 장,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장, 건강기능식품 관련 학회의 장이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대학 또는 산업대학의 장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 3. 건강기능식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건강기능식품의 기준·규격 및 표시·광고 등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⑦ <u>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참고 2】 위생용품 통계 현황

□ 위생용품의 종류(총 21종)

위생용품의 종류		적용범위	예시
1	세척제	과일, 채소, 식품의 용기나 가공기구, 조리기구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제제(製劑)	
2	행굼보조제	자동식기세척기의 최종 행굼 과정에서 식기류에 남아있는 잔류물 제거, 건조 촉진 등 보조적 역할을 위하여 사용되는 제제	
3	위생물수건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세척 등에 사용하는 물수건을 세척, 살균, 소독 등 위생적인 방법으로 재사용 처리해 포장한 제품	
4	일회용 컵	식품과 접촉하는 컵(식품이 담긴 컵은 제외)으로서 일회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5	일회용 숟가락	식품과 접촉하는 숟가락으로서 일회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6	일회용 젓가락	식품과 접촉하는 젓가락으로서 일회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7	일회용 포크	식품과 접촉하는 포크로서 일회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8	일회용 나이프	식품과 접촉하는 나이프로서 일회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9	일회용 빨대	식품과 접촉하는 빨대로서 일회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10	화장지	화장실용 화장지(화장실에서 위생을 위해 사용되는 화장지) 및 미용 화장지(일상생활에서 얼굴 등에 사용되는 화장지)	
11	일회용 행주	주방에서 식품용 기구나 식탁 등을 닦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회용 제품(최초 사용 시 세척하지 않고 사용하는 제품으로 수회 사용 후 폐기하는 제품 포함)으로서 종이제 등으로 만들어진 건조 제품	
12	일회용 타월	식품의 유·수분 등을 닦아내거나 손의 물기를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종이제 등으로 만들어진 일회용 타월	
13	일회용 종이냅킨	사용자의 인체를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개인위생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회용의 종이 냅킨(락테일용 냅킨 포함)	
14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티슈	
15	일회용 이쑤시개	인체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이쑤시개 (식품용 기구 제외)	
16	일회용 면봉	인체를 청결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반면봉 (의약외품 및 화장품 제외)	
17	일회용 기저귀	대·소변을 스스로의 힘으로 가리기 힘든 성인 및 어린이에게 사용되는 것으로서 사용 후 폐기되는 일회용 기저귀[위생갈개(매트) 포함]	

위생용품의 종류		적용범위	예시
18	일회용 팬티라이너	질분비물의 위생처리에 사용되는 것으로 사용 후 폐기되는 일회용 제품(의약외품 제외)	
19	물티슈용 마른 티슈	인체를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마른 티슈로서 최종 단계에서 물을 첨가하여 사용하는 제품	
20	구강관리용품	구강위생 확보, 구강건강의 증진 및 유지 등의 목적으로 제조된 칫솔, 치실, 설태제거기(혀에 낀 이물질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	
21	문신용 염료	인체의 피부에 무늬 등을 새기기 위한 피부 착색 물질로서 미용 또는 예술 표현을 목적으로 영구적 또는 반영구적으로 피부를 착색하기 위해 바늘 등을 사용하여 피부속에 주입하는 것. 다만,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은 제외	

□ 위생용품 영업 신고 현황

(‘25.12. 기준)

구분	합계	위생용품제조업	위생용품수입업	위생물수건처리업
업소 수(개소)	3,736	1,446	2,125	165

□ 위생용품 품목제조 보고 현황

(‘25.12. 기준)

대상	건수
세척제, 행굼보조제,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일회용 기저귀, 팬티라이너, 문신용 염료	10,905

□ 수입검사 연도별 현황

(‘25.12. 기준)

연도	검사종류					부적합 (비율)	수입현황	
	총 수입 건수	서류 검사	현장 검사	정밀 검사	무작위 검사		중량 (천톤)	금액 (백만원)
21년	14,383 (100%)	11,735 (81.6%)	24 (0.2%)	1,280 (8.9%)	1,344 (9.3%)	45 (0.3%)	109	346
22년	14,358 (100%)	12,862 (89.6%)	26 (0.2%)	578 (4.0%)	892 (6.2%)	20 (0.1%)	107	356
23년	15,532 (100%)	13,955 (89.8%)	20 (0.1%)	786 (5.1%)	771 (5%)	28 (0.2%)	107	402
24년	17,359 (100%)	15,510 (89.3%)	24 (0.1%)	955 (5.5%)	870 (5.0%)	28 (0.2%)	113	416
25년	22,523 (100%)	20,251 (89.9%)	11 (0.1%)	1,583 (7.1%)	678 (3.0%)	40 (0.2%)	125	434